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39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3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 검토	4
(1)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4
(2)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9
나. 주요 내용별 검토	14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14
(2)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안 제6조)	15
(3) 도청이전신도시 소재 지역에 대한 교육 특례 신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20
(4)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기여 근거 신설 (안 제31조·제32조·제46조)	22

(5)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안 제36조)	25
(6)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신설 (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50조)	29
(7) 재정부담 감면 근거 규정 신설(안 제47조·제49조)	34
(8) 부칙	41

I.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3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0.

다. 회 부 일 : 2025. 11. 11.

2.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전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충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대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4.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1)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전부개정안은 8개의 장(章), 59개의 본칙,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59개 조문은 총칙규정(6개 조문), 실체규정(44개 조문), 보칙 및 벌칙 규정(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현행법과 동일한 조문은 38개, 현행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조문은 4개이며, 신설된 조문은 16개, 삭제된 조문은 1개임.

【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비교표 】

현행법	전부개정안	비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동일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일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동일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동일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일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동일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동일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동일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제10조(이전계획의 수립)	동일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제11조(이전기관의 이전)	동일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동일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동일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동일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동일

현행법	전부개정안	비고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동일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동일
제17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동일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1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동일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동일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동일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동일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동일
제23조(선수금)	제24조(선수금)	동일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동일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동일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동일
-	<u>제28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u>	신설
-	<u>제2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u>	신설
-	<u>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u>	신설
-	<u>제31조(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u>	신설
-	<u>제32조(이전기관의 우선 구매)</u>	신설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u>제33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u>	일부개정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34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동일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제35조(이전추진단 설치)	동일
-	제4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	<u>제36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u>	신설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5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7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동일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8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동일
제3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39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동일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u>제40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u>	일부개정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제41조(의료기관의 설치)	동일
-	<u>제42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u>	신설
제34조(자금지원 등)	-	삭제
-	<u>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u>	신설
-	<u>제4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u>	신설
-	<u>제45조(특례시 우선 지정)</u>	신설
-	<u>제46조(지역기업의 우대)</u>	신설
-	<u>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u>	신설
-	<u>제48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u>	신설
-	<u>제49조(부담금의 감면 등)</u>	신설
-	<u>제50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u>	신설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u>제51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u>	일부개정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동일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검사 등)	동일

현행법	전부개정안	비고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4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일부개정
제39조(청문)	제55조(청문)	동일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동일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제57조(벌칙)	동일
제41조의2(벌칙)	제58조(벌칙)	동일
제42조(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동일

현행법 대비 개정안에서 추가된 주요 변경 내용(신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

- ① 법률의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②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²⁾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 ③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안 제28조), 교육재정 지원(안 제29조), 외국인 교원의 임용(안 제30조) 등 도청이전신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④ 이전기관³⁾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안

1) 이 밖에 일부 개정 조문 및 삭제된 조문에 대해서는 [참고 1] 참조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의미함. 전라남도 남악신도시도 전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이기는 하나, 위 정의 규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충남 내포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2곳으로 한정됨.

3)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31조),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며(안 제32조), 공사 등 계약 체결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46조) 이전기관의 지역기여를 규정함.

⑤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6조).

⑥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특례시 우선 지정(안 제45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안 제42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시설 건축 비용의 지원(안 제43조), 지식산업센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 및 제4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안 제50조) 등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둠.

⑦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안 제47조), 부담금의 감면 및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안 제49조) 등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재정적 부담을 감면하는 특례를 둠.

개정안의 특례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혁신도시⁴⁾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혁신도시법」과 개정안의 특례규정을 비교하

4)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5) 1기 혁신도시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10개)가 지정되었음.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충청남도(내포신도시)와 대전광역시 일원이 각각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으나, 2026년 1월 기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

면 다음과 같음.

【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법」 특례 규정 비교 】

	전부개정안(신설 규정)	「혁신도시법」
종합발전계획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안 제6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제5조의2)
특별회계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안 제36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교육 관련 특례	교육과정 특례(안 제28조)	교육과정 특례(제25조)
	교육재정지원 특례(안 제29조)	교육재정지원 특례(제26조)
	외국인 교원 임용(안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제27조)
이전기관의 지역기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1조)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의3)
	이전지역 재화 등 우선 구매 (안 제32조)	이전지역 재화 등 우선 구매 (제29조의5)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안 제46조)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제45조의5)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안 제42조)	-
	산학연 시설 건축비용 지원 (안 제43조)	산학연 시설 건축비용 지원 (제45조의2)
	지식산업센터 설립(안 제44조)	지식산업센터 설립(제45조의3)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안 제48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제47조의3)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 ⁶⁾ (안 제50조)	-
특례시	특례시 지정(안 제45조)	-
재정부담 감면	임대료 감면(안 제47조)	임대료 감면(제46조)
	부담금 감면(안 제49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제47조)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⁷⁾ (안 제49조)	-

6) 유사입법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

(2)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현행 「도청이전법」은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음.⁸⁾

【 현행 「도청이전법」상 특례 규정 】

조항	내용
제8조제5항·제6항	개발행위 허가 의제
제16조	인·허가등의 의제·통합절차
제17조	토지등의 수용·사업인정 특례
제19조제1항	기반시설 설치 특례(준용)
제25조	국·공유재산 처분·수의계약·완화
제26조	학교 설립·학교시설사업 특례
제31조의2	종전 도청사·부지 국가 매입·무상양여·장기대부 특례
제32조	이전기관·직원 지원 및 주택·재정 특례
제34조	입주기관·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임대료 감면 특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7) 유사입법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도시(이하 “내포신도시”라 함)가 2007년부터 2조 5,692억원의 사업비로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도시(이하 “경북도청신도시”라 함)가 2010년부터 2조 1,586억원의 사업비로 건설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현황 】

내포신도시	구 분	경북도청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위 치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9.951km ² (홍성 63%, 예산 37%)	면 적	10.966km ² (안동 58%, 예천 42%)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	경북개발공사
2조 5,692억원	사업비	2조 1,586억원 * 청사건립비 3,920억원 별도
2007.7. ~ 2024.12. (2027.12.로 연장)	사업기간	2010년~2027년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러나, 내포신도시·경북도청신도시 모두 건설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어져 내포신도시는 2027년 12월에⁹⁾, 경북도청신도시는 2027년에 각각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 초기에 1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분기 기준 인구는 내포신도시가 4만 5,629명, 경북도청신도시가 2만 3,101명에 불과한 상황임.

9)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초 2007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3단계 개발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이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혁신도시는 2007년 10개 지구 지정 이후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고, 계획인구 대비 87.1%의 목표를 달성하여 산·학·연·관 집적을 기반으로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과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지원에 그쳐 왔다는 지적이 있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일정 부분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 계획인구 목표 달성률】

(단위: 명, %)

유형	도시	실제 인구 (A)	계획인구 (B)	목표 달성률 (A/B)
도청이전신도시	내포신도시	45,629 (2025. 10. 기준)	100,000	45.6
	경북도청신도시	23,101 (2025. 9. 기준)	100,000	23.1
혁신도시 인구 총합(10개)		232,632 (2022. 6. 기준)	267,000	87.1

※ 자료 :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충남도청 자료 재구성

개정안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온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법」 수준의 종합적인 특례·지원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한편,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도청이전법」은 도청소재지·관할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한 도청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 법률의 입법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법」상의 특례 규정을 도청이전신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혁신도시는 정부가 2005년에 마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¹⁰⁾ 각 시·도에 1개씩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온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가 혁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받을 경우 양 제도 간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혁신도시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10) 2020년 10월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과 「도청이전법」은 입법취지 및 이해 당사자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혁신도시법 수준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는 것은 5극3특 체제의 행정통합 상황, 지자체간 형평성 및 정책비용 부담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현행	개정안
「<u>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u>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청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u>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도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이는 현행법이 도청 및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를 통한 도시의 ‘건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도청 및 공공기관의 이전(移轉) 이후 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까지를 포괄하는 법률로 목적과 지향점을 전환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안 제6조)

개 정 안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도청이전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5.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3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11)을 참고하여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청이전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제6조12), 사업시행자¹³⁾가 2년 이내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제13조14)을 얻은 후 3년 이내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제14조15)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개정안의 종합발전계획에는 현행법상 개발계획(제13조)과 실시계획(제14조)에 포함된 개발·실시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주환경 조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도시 조성,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도청이전신도시 전반에 관한 폭넓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하여 거시적·종합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조성 이후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개발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안 제6조제2항제4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16)는 적용 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 동 법률의 개정이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¹⁷⁾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종합발전계획과 현행법에 규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청이전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 전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정안의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개발계획 및 해안및내륙권 종합발전계획¹⁸⁾과 중복 또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후에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발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제2214042호)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18) 해안및내륙권 종합발전계획 : 충남이전신도시(내륙첨단단업권), 경북이전신도시(백두대간권)

(3) 도청이전신도시 소재 지역에 대한 교육 특례 신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개 정 안
제28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다)의 도지사·시장·군수는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도청이전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교육감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도청이전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19)을 참고하여 도청이전신도시 안에 특수

목적고·자율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안 제28조), 교육재정 특례(안 제29조), 외국인 교원 임용(안 제30조) 등 교육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신도시 소재 학교에 교육 관련 특례를 인정할 경우 도청이전신도시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이전기관 등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저조한 정주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예산지원, 교원임용 사항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⁰⁾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4)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기여 근거 신설

(안 제31조·제32조·제46조)

개 정 안
제31조(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도청이전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이전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이전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 교육부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개정안은 「혁신도시법」²¹⁾을 참고하여 이전기관이 도청이전신도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게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31조), 이전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와 재화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안 제32조), 이전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6조).

현행법은 지역발전을 위한 이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전기관의 지역 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로 조기에 육성·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발전계획 및 재화·서비스 구매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통보·공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이전기관 협의당사자인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

개정안(신설)	수정의견
제31조(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③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통보하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③ ----- ----- <u>도지사</u> -----,----- <u>도지사는</u> ----- -----.
제32조(이전기관의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통보하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전기관의 우선 구매) ② - ----- ----- ----- <u>도지사</u> -----, <u>도지사는</u> ----- -----.

(5)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안 제36조)

개 정 안
제36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법」 제33조²²⁾ 이하에 따라 그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도청이전법」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²³⁾하고 있으면서도 재정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2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2항, 제34조(자금지원등)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비용²⁴⁾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며, 도청 이전의 원인인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간의 불일치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발생한 성격도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도청이전신도시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기존 재원수단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바²⁵⁾, 별도의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요건²⁶⁾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⁷⁾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각각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25)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입도로 사업에 대해 2016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0억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9억 9,200만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 있음.

2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세입·세출 범위 및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와의 전입·전출 관계, 차입 한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시법」에서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전입·전출 및 차입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²⁸⁾, 2007년 발의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²⁹⁾에서도 세입, 세출을 법률에 명시적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7) 과거 2008년 법률 제정안에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삭제된 바 있음. [제17대국회 제271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08.02.13.)]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7345

제32조(도청이전신도시 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이전기관의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33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제34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의 수입으로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도청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는 만큼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일몰규정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³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³¹⁾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1]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특별회계 신설은 재정당국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 전 비용 부담 주체와 사회적 합의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세부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입장임.

제35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0)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에 관한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한 바 있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0.] [충청남도조례 제5716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청소재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6)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신설
(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50조)

개 정 안
제42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특례시 우선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가 소재한 시·군에 대하여 특례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개 정 안

3.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4. 도청이전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7. 도청이전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안 제42조), 특례시 우선 지정(안 제45조),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50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혁신도시법」³²⁾을

참고하여 지식산업센터(안 제44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안 제48조)의 설치·운영,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연구기관 등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하여 행정·재정 운영에 특례를 인정하고, 산업단지,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을 촉진하며, 각종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안 제42조)과 관련하여,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권한과 절차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³³⁾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와 이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3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제도의 일관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지정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특례시의 우선 지정(안 제45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개별법에서 특례시 우선 지정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안 제48조), 국토교통부는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비용 출연 등의 주체는 유사기관 간 형평성 고려 시 국가를 제외하고 관할 지자체 및 이전기관으로 규정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임.

【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

개정안(신설)	수정의견
제48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기관</u> 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④ <u>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u> ----- ----- ----- -----.

(7) 재정부담 감면 근거 규정 신설(안 제47조·제49조)

개 정 안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49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소재한 시·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입주기업 등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7조 제1항), 사업시행자와 이전기관이 사용을 허가받은 국·공유지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7조제2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하여 각종 부담금 감면(안 제49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안 제49조제2항)의 특례34)를 「혁신도시법」 35)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명시하려는 것임.36)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이전 및 입주를 유인함으로써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인구 증가 및 이주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34)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혁신도시법」에 규정되지 않음.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6) 「혁신도시법」에는 부담금 감면과 함께 조세 특례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조세 특례를 제외하고 부담금 감면 조항만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별표를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⁷⁾ 개정안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는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둘째, 각종 부담금 감면(안 제49조제2항)과 관련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³⁸⁾에서 부담금의 부과, 감면을 부과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담금 감면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부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개별법상 규정 】

대상 부담금	근거 법률	감면 규정
개발부담금 ³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⁴⁰⁾	「농지법」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 동 부담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을 규정
대체초지조성비 ⁴¹⁾	「초지법」	「초지법」 제23조제8항에서 동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를 규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⁴²⁾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하도록 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⁴³⁾	「자연환경보전법」	감면규정 없음
교통유발부담금 ⁴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에 경감 조항 규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⁴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서 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규정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⁴⁶⁾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감면규정 없음
기반시설설치비용 ⁴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및 제6항 ⁴⁸⁾ 에서 동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 및 기준을 규정

3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42)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셋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안 제49조제3항)은 「혁신도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특례 규정으로,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청이전신도시와 다른 혁신도시·산업단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49)에서 유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규정은 도청이전신도시 지원의 필

-
- 6.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 재생사업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요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8)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6호 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3호 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부담금 등 재정부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부과·징수된 부담금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이 법 시행 이전부터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발전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한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79

참고

도청이전법 현행법 및 전부개정(안) 조항 비교

□ 전부개정안 조문 분석

구분	조문	신설	삭제	수정
현행법	44	-	-	-
개정(안)	59	16	1	4

* 전부개정안은 5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설 16, 삭제 1, 수정 4개 조문 외는 연결조사 또는 인용조항의 수정 등으로 현행과 동일

□ 신·구 조항별 비교

현행법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현행과 동일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현행과 동일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현행과 동일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동일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설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현행과 동일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현행과 동일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현행과 동일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제10조(이전계획의 수립)	현행과 동일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제11조(이전기관의 이전)	현행과 동일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현행과 동일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현행과 동일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현행과 동일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현행과 동일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현행과 동일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현행과 동일
제17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현행과 동일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1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현행과 동일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현행과 동일
제20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현행과 동일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현행과 동일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조성토지등의 공급)	현행과 동일
제23조(선수금)	제24조(선수금)	현행과 동일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현행과 동일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현행과 동일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현행과 동일
-	제28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신설
-	제2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신설
-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신설
-	제31조(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신설
-	제32조(이전기관의 우선 구매)	신설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33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일부개정 (종합발전계획 관한 사항 추가)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34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현행과 동일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제35조(이전추진단 설치)	현행과 동일
-	제36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신설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7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현행과 동일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8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현행과 동일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39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현행과 동일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일부개정 (국가 지원 추가 및 이전비용 지원조례 마련 의무 삭제)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제41조(의료기관의 설치)	현행과 동일
-	제42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신설
제34조(자금지원 등)	-	삭제
-	제43조(이전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신설
-	제4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신설
-	제45조(특례시 우선 지정)	신설
-	제46조(지역기업의 우대)	신설
-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신설
-	제48조(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신설
-	제49조(부담금의 감면 등)	신설
-	제50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신설
제51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일부개정 (조치자에서 광역시장 및 구청장 삭제)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현행과 동일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53조(보고 및 검사 등)	현행과 동일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4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일부개정 (건의자에서 광역시장 삭제)
제39조(청문)	제55조(청문)	현행과 동일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현행과 동일
제41조(벌칙)	제57조(벌칙)	현행과 동일
제41조의2(벌칙)	제58조(벌칙)	현행과 동일
제42조(양벌 규정)	제59조(양벌 규정)	현행과 동일